전남 농업용 저수지 5곳 중 1곳 오염 심각

지난해 202곳 전국 최다
농어촌公 수질관리 年 11억
관리 일원화 등 대책 시급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5곳 중 1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막대한 수질관리비용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수질악화 저수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 상록을)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 수질기준치 초과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3394개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호소수질 Ⅳ(4)등급(TOC 6㎎/L)을 초과한 곳이 전체의 17.2%인 576곳에 달했다.

■ 농어촌공사 관리 전남 저수지 수질 Ⅳ등급 초과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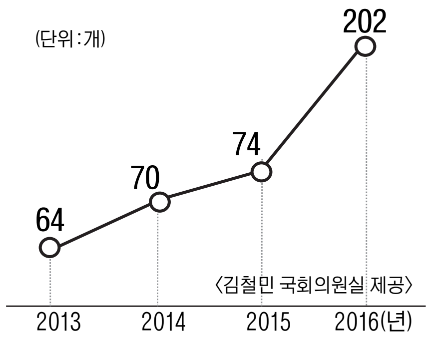

이는 전년도 330곳에 비해 무려 74.6%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남지역 저수지의 수질 악화가 심각했다. 수질기준 초과 전국 저수지 가운데 35.1%에 해당하는 202곳이 전남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는 저수지 51개소 가운데 7곳에서 수질기준을 넘어섰다.

전남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는 2013년 64곳(6.5%)에서 2014년 70곳(7.1%), 2015년 74곳(7.5%)으로 해가 갈수록 늘다가 지난해 202곳(20.4%)으로 폭증했다.

해마다 평균 11억여원을 전남 저수지 수질관리비용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 속도는 더디다. 수질 악화된 저수지의 TOC(총 유기탄소)는 2014년 7.9㎎/L에서 2015년 7.5㎎/L, 2016년 7.3㎎/L으로 조사됐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개선사업과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해 수질관리 사업비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622억2800만원을 쏟아부었지만 수질 악화를 막지 못한 채 되레 기준 초과 저수지를 늘렸다.

수질오염 증가 이유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 저수지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 등이 지목되고 있다.

또 최근 수년간 반복되는 가뭄으로 유입수량 부족, 저수지내 물순환율 저하(정체현상 증가)로 인한 오염도 상승, 농어촌지역의 낮은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등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저수지 수질관리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로, 오염원 관리는 환경부와 지자체로 이원화 돼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농어촌공사는 기온상승과 강수량 탓만 하지 말고, 농림부·환경부·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저수지 수질관리와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文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

경찰의 날 기념식서 표명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신속한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문무일 검찰총장도 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자치경찰제' 틀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사권 조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경찰에 넘기느냐다. 검찰은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 있으므로 검찰은 기소만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반면 경찰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옳은 방향이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체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의 견해차를 자율적으로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이라는 시기 문제 역시 수사권 조정 논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개헌 등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의지를 시사,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내달 중 수사권 조정 범위와 시기, 방식 등에 관한 1차 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멸종된 줄 알았던 물석송
80년 만에 완도서 발견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양치식물 '물석송'〈사진〉이 80년 만에 완도에서 발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3기(2017년~2018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에서 양치식물인 '물석송' 자생지를 완도군 일대에서 최근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물석송은 지난 1936년 제주도에서 채집된 이후 그동안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채집자 등 구체적인 정보도 남아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절멸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이번에 발견된 자생지의 면적은 400㎡ 안팎이며 개체 수는 500여 개로 조사됐다.

물석송은 석송과(Lycopodiaceae) 식물로, 키가 작고 땅에 누워 자라며 물이 있어야 번식이 가능한 특성 탓에 습지 가장자리에서 주로 서식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식물로 꼽힌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완도군 일대를 국내 유일 물석송 자생지로 기록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물석송의 표본 자료를 확보하고 생태적 특징과 서식 정보 등을 정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청와대 "신고리 건설 재개…탈원전은 추진" 박수현(왼쪽 두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공군 '군공항 이전' 적극 개입해야"

김동철 의원 국감 지적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국방부와 공군이 '(종전 부지 지자체와 이전 후보지 지자체간) 지역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수수방관하는 것은 '대표적 민생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군의 경우 군시설 이전 및 군공항 소음에 따른 갈등조정 경험을 토대로 군공항 이전 논의가 답보상태에 놓인 지역을 위해 '군공항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군공항 이전에 따른 막연한 우려' 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는 등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0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절차를 핑계 대며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갈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방부도 문제지만, 반세기 동안 군공항 소음에 따른 갈등관리 노하우를 가진 공군조차 군공항 이전 문제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조속한 군공항 이전만이 국가예산 절감,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보호, 정상적인 비행훈련과 효과적인 영공방위 전략수립 등 현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1석3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군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우선 군공항 이전에 따른 우려 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해당 지역에 설명하는 일이다. 또한 군공항 이전을 통해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정부부처·지자체·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게 하는 것도 공군이 당장 할 수 있는 역할로 받아들여진다.

/김형호기자 khh@

존엄사 스스로 결정…연명의료법 시범실시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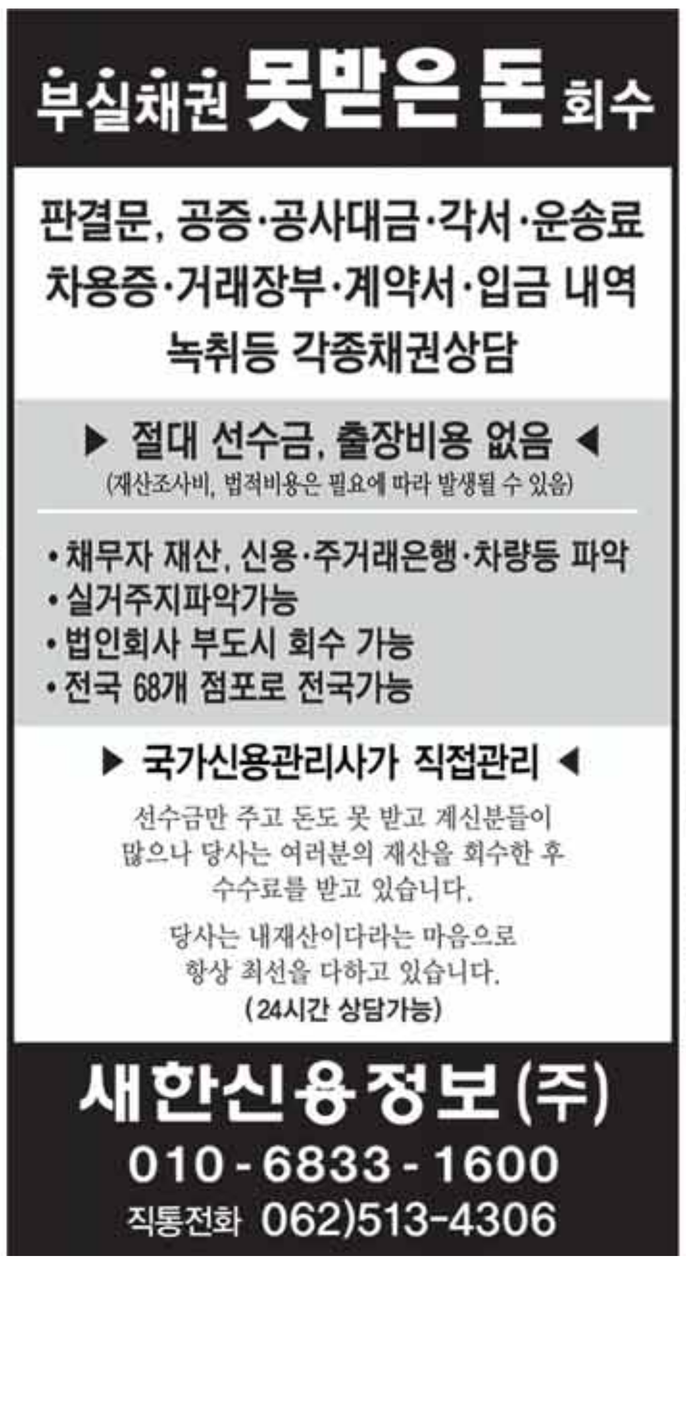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가 서류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환자 뜻을 진술한 경우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연합뉴스